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부

2018년 국민 불편 및 산업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 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하였습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상관없이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개선 유해화학물질 물질별 취급량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차등화하고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2018.7.3.,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방법을 온라인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전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종이서류로 제출했었습니다.

개선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 (2018.1.1., 시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시설종류별로 지정된 시기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보고해야 하나, 동일 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상반기) 주차장,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하반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 소유자는 연중 1회 통합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시간, 비용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8.10.18., 시행)

피해구제급여 선지급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사유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 선지급 세부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환경오염 피해자가 적기에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환경산업기술원 내부지침 개정('18.8.1., 시행)